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5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소병훈·김교흥·허 영

백승아・박 정・윤종군

김용태 • 서삼석 • 서영석

이원택 • 박희승 • 이수진

이언주 • 박지원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 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,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 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(볼라드)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

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	전용주차구역 등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	
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	
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	
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	
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 <u><후</u>	
<u>단 신설></u>	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장
	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
	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
	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
	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⑫ (생 략)	② ~ ⑫ (현행과 같음)